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28 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 조은희 · 이성권 · 서일준

이만희 • 김기현 • 박성훈

김용태 • 주호영 • 신동욱

윤상현 · 조배숙 · 한기호

박정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능화되고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신종사기범죄에 대응해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.

특히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, 리딩방, 가상자산(코인) 사기,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, 현행법은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사기범들이 제3자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국 민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음.

이에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(안제2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"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"를 "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를 위반하여 범행한 경우,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| 제2조(정의) | | |
|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| | | |
| 1. · 2. (생 략) 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| | |
| 3. "범죄피해재산"이란 별표에 | 3 | | |
|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 | | | |
|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| | | |
| 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 | | | |
| 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| | | |
| 그 재산의 보유·처분에 의하 | | | |
| 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. | | | |
| 가. 「형법」 제2편제39장 사 | 가 | | |
| 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 | | | |
| 조, 제347조의2 및 제351 | | | |
| 조(제347조 및 제347조의2 | | | |
|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에 | | | |
| 해당하는 죄[「형법」 제1 | | | |
| 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| | | |
|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, | | | |
|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|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6조 | | |
|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| 제3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| | |
| <u>유사수신행위</u> 또는 「방문 | 사용 및 관리를 위반하여 | | |
| 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 | 범행한 경우, 「유사수신 | | |
| 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 |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| | |

매의 방법으로 기망(欺罔) 하여 범행한 경우 및 「전 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 하는 경우(이하 "특정사기 범죄"라 한다)로 한정한 다]와 「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중 「형법」 제347 조, 제347조의2 및 제351 조(제347조 및 제347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에 해당하는 죄(특정사기범죄 로 한정한다)

나. (생 략) 4.·5. (생 략)

| i | 률」 | 제2조이 | 에 따른 | 유사수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<i>!</i> | 신행의 | <u> </u> | | |
| - | | | | |
| - | | | | |
| - | | | | |
| - | | | | |
| - | | | | |
| - | | | | |
| - | | | | |
| - | | | | |
| - | | | | |
| - | | | | |
| _ | | | | |
| _ | | | | |
| _ | | | | |
| 나. | | 행과 같 | - 음) | |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